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02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황정아·조인철·정동영

박민규 • 이훈기 • 김우영

최민희 • 노종면 • 이정헌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제4항 신설, 제13조, 제14조, 제14조 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를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 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3조제2항 중 "9명으로"를 "15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

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
 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이사회의 이사와 공사의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 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사장ㆍ이사"를 "이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임원) ① (생 략) |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사장은 <u>방송통신위원회 위</u> | ②제13조에 따른 이사 |
|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 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 <u>를 받아</u> 임명한다. | |
| ③ 감사는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 ③이사회의 제청으로 |
| 임명한다. |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
| ④ 부사장은 사장이 <u>임명한다</u> . | ④ <u>임명하되,</u> |
| |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 ③ |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 ③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
| | 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 |
| | 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 | <u>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해당하는 경우 |
| | <u>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u>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u>경우</u> |
| |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
| | 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
| |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현행과 같음)

- -----15명으 로----.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 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 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 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신 설>

- ④·⑤ (생 략)
-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

-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 (7) -----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단</u> 서 신설>

<신 설>

<신 설>

⑦ ~ ⑨ (생 략)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u>⑩</u> ~ <u>⑫</u>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

- 의결하다.
- 1. ~ 5. (생략)

<u><신 설></u>

<신 설>

6. ~ 12. (생략)

② (생략)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 5의3. 제14조의2의 사장후보추 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 6.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 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 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